

명대 천문 ‘사습(私習)’의 금지령과 천문서적의 출판: 그 이념과 실제*

1

신민철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The Ban on the Private Study of Astrology and Publication of Books on Astrology in Ming Dynasty: Ideas and Reality

SHIN Min Cheol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BSTRACT

The first emperor of the Ming dynasty issued a ban on the private study of astrology in the *Great Ming Code* to monopolize the right of interpreting the political meanings of astronomical phenomena, otherwise some *xiaoren* 小人 might have abused it to disturb imperial legitimacy. In existing studies on astronomical policy in the Ming

1 * 초고를 집필하는 동안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영식 선생님과 임종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용문의 원문을 일일이 찾아서 대조하고 해석을 매끄럽게 다듬어준 허윤섭 선배, 그리고 세세한 오류의 수정은 물론 논리 전개와 각 절의 적절한 제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dynasty, this ban has been regarded as a serious obstacle to the progress of astronomy by interrupting the reproduction of diverse and abundant human resources for astronomy.

However, researches on this subject has overlooked two important problems. (1) Although very few had an objection to the fact that the ban was mitigated in the mid-Ming perio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ts relaxation has not yet been properly investigated. (2) What is more important: it has thus far gone unnoticed that some Ming scholars had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heir private study of astrology and publication of books on astrology, which could have been used as primary materials for unauthorized persons' learning of astrology in that time period and even after the relaxation of the ban. This would have had even greater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lengthy duration, for the ban was not abolished, but still remained in the *Great Ming Code* throughout the Ming dynasty. This paper discusses how these Ming scholars justified their own private study of astrology. I argue that they searched for a solution to that problem by transforming a traditional outlook on *xiaoren*.

Key words: astrology, *Great Ming Code*, *Tianyuan yuli xiangyifu*, publication, Cai Zhengmao, Xie Cunren, Hu Xianzhong, "xiaoren"

1. 머리말

명대(明代)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천문역법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송·원(宋元)시대에 이룩한 눈부신 천문역법의 성취는 명대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퇴조했다는 것이 과거 몇몇 중국과학사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다.²⁾ 명대의 천문학이 쇠퇴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 첫째, 명

2) 예컨대 杜石然 等編, □ 中國科學技術史稿(下冊)□ (北京: 科學出版社, 1985)의 명대 과학기술사 부분은 실용기술에 대한 서술로만 채워졌을 뿐, 천문학에 대한 節은 아예 할애되지 않았는데, 이는 명대 천문학이 거의 침체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편자들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책, 190쪽. 이러한 시각은 陳美東 主編, □ 中國科學技

중기 양명학(陽明學) 또는 심학(心學)의 등장이다. 양명학은 학문의 관심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 함몰시켜 버렸다는 점에서 천문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여겨져 왔지만,³⁾ 최근에는 양명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사물의 탐구에 종사했던 인물들의 사례들이 점차 밝혀지면서, 더 이상 양명학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⁴⁾

둘째는 천문의 ‘사적인 학습[私習]’을 ㄱ 대명률(大明律) ㄱ 로써 금지하는 소위 ‘사습천문(私習天文)의 금(禁)’이 그것이다. 이 설명 방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천문의 ‘사습(私習)’을 금지하는 ㄱ 대명률 ㄱ 의 조항이 천문역법의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의 재생산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명대 천문학의 발달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⁵⁾ 이 주장은 아직까지 명대 천문학의 쇠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다른 아닌 명대 지식인들 스스로의 목소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덕부(沈德符, 1578-1642)가 ㄱ 만력야획편

術史—天文學卷 ㄱ (北京: 科學出版社, 2003)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Joseph Needham 역시도 비슷한 서술을 하고 있다.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pp. 173, 209. Ho Peng Yoke(何丙郁)은 ‘총체적인 쇠퇴(general decline)’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명대 천문학의 상황을 지적했다. Ho Peng Yoke, *Li, Qi and Shu: An Introduction to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p. 169.

- 3) 예컨대 Mark Elvin은 “[‘心’ 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현상에 대한 기계론적·양적 접근을 방해” 하였으며, “중국의 과학에 대해서 이같은 철학이 끼친 결과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고 한다. 마크 엘빈 著, 李春植·金貞姬·任仲燦 共譯, ㄱ 中國歷史的發展形態 ㄱ (신서원, 1989), 231-240쪽. 杜石然 等編, ㄱ 中國科學技術史稿(下冊) ㄱ, 185-186쪽에서도 명대 “理學과 心學의 汎濫”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했다.
- 4) 戴內清은 唯心論의 입장을 강조하는 양명학 그 자체가 자연과학의 발달을 촉진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實學’ 에 뜻을 둔 많은 양명학자들이 啓蒙과 實用性을 겸하는 과학기술서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자연에 극단적인 무관심을 보인 사람은 陽明學 左派 정도에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實心’ 을 우선으로 하는 ‘實事’ 의 탐구를 주장한 조선후기 양명학자 鄭齊斗(1649-1736)의 사례는, 양명학자라고 해서 자연의 법칙에 무관심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명대 후기에 출판된 각종 類書 및 叢書의 분석을 통해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그려낸 Benjamin A. Elman은 이 당시의 사상 풍조가 양명학 일색이었다고 파악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 각각 戴內清, “陽明學と明代の科學”, ㄱ 陽明學入門 ㄱ (東京: 明德出版社, 1971), 365-384쪽; 具萬玉, ㄱ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 I —— 朱子學의 宇宙論의 變動 ㄱ (혜안, 2004), 393-401쪽; Benjamin A.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의 I부, 특히 pp. 19-20, 27-28을 볼 것.
- 5) 王萍, ㄱ 西方曆算學之輸入(修訂再版) ㄱ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0), 46-47쪽; 陳美東, ㄱ 中國科學技術史—天文學卷 ㄱ, 555-558쪽; 江曉原·鈕衛星, ㄱ 中國天學史 ㄱ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 187-188, 250-252쪽.

(萬曆野獲編)을 통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은 천문 ‘사습’의 금지령과 천문학의 쇠퇴가 인과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근거로 여겨졌다.

국초(國初)에는 천문의 학습에 엄금(嚴禁)이 있어서, 역법을 공부하는 자는 [변방을 지키는] 수졸(戍卒)로 보냈다. … 효종(孝宗, 연호는 弘治, 재위 1488-1505) 연간에 이르러 그 금지를 완화시키고 또한 산림은일(山林隱逸) 중에서 역학(曆學)에 능통한 자를 등용할 것을 명하여 선발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끝내 응시하는 자가 없었다.⁶⁾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위 기록에만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첫째, 위의 기록에 의거하여 천문 ‘사습’의 금지는 명대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관철되지 않고 홍치(弘治) 연간에 이르러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⁷⁾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소홀했다. 그 배경은 15세기 중엽부터 진행된 정치질서의 해이 현상을 통해서 다소 해명될 수도 있지만,⁸⁾ 더 직접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명조(明朝) 천문학 정책의 특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천문 ‘사습’의 금지가 완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령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천문 ‘사습’을 변호하려던 명조 학인(學人)들의 태도가 사상(捨象)되어

6) 沈德符, “曆法”, 萬曆野獲編 卷 20 (北京: 中華書局, 1997), 524-525쪽. “國初學天文有厲禁, 習曆者遣戍. … 至孝宗, 弛其禁, 且命徵山林隱逸能通曆學者, 以備其選, 而卒無應者.” 한편 萬曆 41년(1613)에 시행된 會試의 답안에서도 “오늘날의 律曆이 폐절되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역법[학습]의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필자 미상, “萬曆癸丑會試 第四問 曆法”, 茅維輯, 皇明策衡 卷 26 (四庫禁燬書叢刊本), 633쪽. “嗟乎! 今之律曆所以遂廢不可復者, 何也? 樂之防過弛, 曆之禁過嚴, 合之則視兩事太輕而莫之重也.”

7) 管見에 한하여 소위 ‘弘治弛禁’에 반대하는 연구는 史玉民, “《萬曆野獲編》卷二十 ‘曆學’條正誤”, 自然辯証法通訊 第 22 卷 第 2 期 (2000), 77-79쪽이 유일하다. 史玉民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공식적인 ‘弛禁’의 발효가 법률 조항 및 기타 詔令 등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天文曆數에 정통한 재야 지식인을 흠천감 관원으로 선발하라는 弘治帝의 칙령을 ‘弛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弛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조치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定制’라는 것이다.

8) 중앙정부가 사회 전체를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냈던 明初의 상황에 대해서는 Edward L. Farmer, *Zhu Yuanzhang and Early Ming Legislation: the Reordering of Chinese Society Following the Era of Mongol Rule* (New York: Brill, 1995)을 참고할 것. 15세기 중엽 이후 정치·사회 질서의 이완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Denis Twitchett and Tilemann Grimm, “The Ch’ eng-tung, Ching-t’ ai, and T’ ien-shun Reign, 1436-1464,” in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1,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305-342; James Geiss, “The Cheng-te Reign, 1506-1521,” 같은 책, pp. 403-439가 여전히 유효하다.

버렸다. 그들의 입장은 16세기 중반을 전후로 출판문화가 급성장하면서⁹⁾ 나타난 천문서적의 출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⁰⁾ 천문의 ‘사습’은 결국 서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완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천문서적의 출판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㉔ 대명률(大明律) ㉔ 속의 금지령 자체는 명조가 멸망할 때까지 끝내 삭제되지 않았는데, 이를 동서고금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국법과 사회관행 사이의 괴리를¹¹⁾ 보여주는 일례로만 치부할 것인가? 천문의 ‘사습’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국법과 천문서적의 출판을 통해 천문의 ‘사습’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긴장을 학인(學人)들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였는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먼저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마련된 정치사상적인 동기, 즉 ‘소인(小人)’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불신(不信)을 재확인한 다음,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완화되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계기를 함천감(欽天監) 관직의 세습 제도와 그 변질 과정에서 찾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명조의 학인들이 자신의 천문 ‘사습’과 천문서적의 출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㉔ 천원옥력상이부(天元玉曆祥異賦) ㉔ 라는 천문서적의 편찬 경위를 각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문서적을 읽는 독자들의 도덕성을 재평가하고 신뢰하는 논리를 모색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2. 흑세무민하는 소인(小人):

천문 ‘사습(私習)’의 금지와 그 이념

9) 명대 출판문화의 성장에 대하여 개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繆咏禾, ㉔ 明代出版史稿 ㉔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0); 大木康, ㉔ 明末江南の出版文化 ㉔ (東京: 研文出版, 2004); 井上進, ㉔ 中國出版文化史—書物世界と知の風景 ㉔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192-342쪽; Chow Kai-wing, *Publishing, Culture, and Power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57-89 등이 있다.

10) 어떤 천문서적이 언제부터 얼마나 출판되었는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작업이다. 그러나 “천문서적, 예컨대 ㉔ 觀象玩占 ㉔ 같은 책들은 원래 모두가 禁書였다. [그러나] 嘉靖 연간(1522-1566)에 책방들이 [이러한 책들을] 抄謄하여 판매하니 사대부의 가정들도 왕왕 그것을 소장했다”고 회상한 徐學謨(1522-1593)의 증언을 보면 적어도 명 후기에는 천문서적의 ‘출판’이 적잖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徐學謨, ㉔ 世廟識餘錄 ㉔ 卷2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本), 55쪽. “天文書, 若觀象玩占之類, 俱係禁書. 嘉靖中書肆多抄謄販賣, 士大夫家往往有之.”

11) 吳金成, ㉔ 國法과 社會慣行—明清時代 社會經濟史 研究 ㉔ (지식산업사, 2007)은 ‘국법’과 ‘사회관행’의 괴리라는 안목에서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의 몇 가지 현상들을 조명한다.

오늘날 ‘천문(天文)’이라는 말은 ‘천문학(astronomy)’의 약어(略語)로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의 고대문헌에서 ‘천문’은 현대적 의미의 ‘천문학’보다는 ‘점성술(astrology)’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 한서(漢書) ㉡ 예문지(藝文志)에서 “천문이란 28수(宿)를 정돈하고 오성(五星)과 일월의 운행을 추적하여 길흉의 상(象)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성왕(聖王)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 [고딕체는 필자의 강조]이라고 정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¹²⁾ 특히 인용된 구절의 맨 뒷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천체들의 움직임과 그 변화는 장래 국가에 닥칠 일들과 정치적 사안들의 길흉을 예고했기 때문에, 점성술과 관련된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¹³⁾ “소인(小人)이 그것[즉, 천문]을 하면 흉한 것을 가리켜 길하다고 하고 나쁜 징조를 좋은 징조라고 말하게 되므로 수술(數術)이 착란을 일으켜 [천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당대(唐代) 위징(魏徵, 580-643)의 경고는 천문지식을 아무나 소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말해준다.¹⁴⁾

역대의 황제들은 ‘소인’들이 천문지식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문기구와 천문서적의 사적인 소장 및 천문의 ‘사습’을 금지하는 조령(詔令)을 꾸준히 반포하였다.¹⁵⁾ 천문지식을 독점하려고 했던 통치자들의 의지는 곧바로 형률(刑律)에 반영되었다. ㉢ 당률(唐律) ㉣ 에서 그 원형이 확립된 천문 ‘사습’의 금지령은¹⁶⁾

12) ㉠ 漢書 ㉡ 卷 30 藝文志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모든 正史는 이 판본을 이용함), 1765쪽. “天文者, 序二十八宿, 步五星日月, 以紀吉凶之象, 聖王所以參政也.” 한편, 이문규는 고대인들이 사용한 ‘천문’의 의미를 단순한 점성술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는 ‘천문’을 “직접 눈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를 그들 나름의 방식에 따라 묘사하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그들의 실제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방법 전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 (문학과지성사, 2000), 55-56쪽.

13) 中山茂, “중국 점성술의 특징”, 김영식 편, ㉢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 (창작과 비평사, 1986), 217-221쪽; Ho Peng Yoke, “Appendix I: Traditional Chinese Astrology,” *Chinese Mathematical Astrology* (New York: Routledge, 2003), pp. 139-152; 江曉原, ㉢ 天學眞原 ㉣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1), 82-91쪽; 山田慶兒, ㉢ 授時曆の道—中國中世の科學と國家 ㉣ (東京: みすず書房, 1980); 橋本敬造, ㉢ 中國占星術の世界 ㉣ (東京: 東方書店, 1993), 147-161쪽; 川原秀城, ㉢ 中國の科學思想—兩漢天學考 ㉣ (東京: 創文社, 1996), 17-24쪽 등을 볼 것.

14) ㉢ 隋書 ㉣ 卷 34 經籍志, 1021-22쪽. “天文者, …, 小人爲之, 則指凶爲吉, 謂惡爲善, 是以數術錯亂而難明.”

15) 江曉原·鈕衛星, ㉢ 中國天學史 ㉣, 250-252쪽; 山田慶兒, ㉢ 授時曆の道 ㉣, 82-91쪽.

16) ㉢ 唐律疏議 ㉣ 卷 9 職制律. “諸玄象器物、天文圖書、讖書、兵書、七曜曆、太一、雷公式, 私家不得有. 違者徒二年. 私習天文者亦同.” ‘私習天文’과 관련된 조항은 康熙 23년(1684)에 이르러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고 한다. 史玉民, “清欽天監管理探蹟”, ㉢ 自然辯證法通訊 ㉣ 第 24 卷 第 4 期 (2002), 54쪽.

다음과 같이 ㉔ 대명률㉔ 에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일반인의 가정[私家]에서 현상기물(玄象器物), 천문·도참서(天文圖讖書)와 같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책 및 역대 제왕(帝王)들의 도상(圖像)과 부새(符璽) 등을 소유한 자는 장형(杖刑) 100대로 다스린다. 천문을 ‘사습(私習)’ 하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¹⁷⁾

명의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 연호는 洪武, 1368-1398)이 국초에 반포한 이 법령은 천문기구, 천문·도참서의 개인적인 소장을 모두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 만력(萬曆) 연간에 간행된 ㉔ 대명률(大明律)㉔ 의 주석서는 천문기구와 천문서적의 사적인 소장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기옥형(璇璣玉衡)과 혼천의(渾天儀) 등의] 천문기구는 천운(天運)을 드러내주며, 천문·도참은 미래의 길흉을 예측하여 흑세무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당 금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¹⁸⁾

“천문·도참은 [그것을 사사로이 익히면] 흑세무민하기에 족하다” 는 그들의 우려는 종종 현실로 나타났다. ㉔ 명실록(明實錄)㉔ 에 남아있는 여러 반란과 역모 사건들 속에서 천문지식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불궤(不軌)’ 를 도모하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만력 8년(1580), 황제에게 도착한 한 통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한다. 호광(湖廣)·귀주(貴州)의 경계에 살고 있는 요인(妖人) 증광(曾光)이 조정을 비난하는 학자들과 결탁하여 오여자(五如子)·순일진인(純一真人) 등의 도호(道號)를 주고 천문(天文)·둔갑(遁甲)에 관계된 서적을 전수하였는데, 어느 날 하늘에 혜성이 나타난 일을 계기로 반란을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¹⁹⁾

17) ㉔ 大明律㉔ 卷 12 禮律. “凡私家收藏玄象器物, 天文圖讖, 應禁之書及歷代帝王圖像, 金玉符璽等物者, 杖一百. 若私習天文者, 罪亦如之.”

18) ㉔ 大明律集解附例㉔ 卷 12 禮律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 951쪽. “此見玄象器物, 以著天運, 與夫天文圖讖, 足以惑世誣民, 皆應禁之書.” 1474년 都察院 左都御史 李賓 등의 上奏에는 妖言을 퍼뜨린 죄인으로부터 압수한 70여 종의 天文圖讖書의 목록을 보여준다. ㉔ 憲宗實錄㉔ 成化 10 年 12 月 13 日, [上]336쪽. 이하 모든 ㉔ 明實錄㉔ 은 何丙郁·趙令揚 編, ㉔ 明實錄中之天文資料㉔ 上冊一下冊 (香港: 香港大學中文系, 1986)에서 인용하고, 쪽수 앞에 []를 넣어 上冊과 下冊을 구별한다. 명대의 금서정책에 관해서는 安平秋·章培恆 主編, ㉔ 中國禁書大觀㉔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1990), 69-101쪽; Timothy Brook, “State Censorship and the Book Trade,” *The Chinese State in Ming Society* (New York: RoutledgeCurzon, 2005), pp. 118-136을 참고.

19) ㉔ 神宗實錄㉔ 萬曆 8 年 正月 19 日, [下]593쪽. 이외에도 천문 ‘私習’의 금지령을 어긴 이유로 처벌된 사건들은 다음 기록들을 참고하라. ㉔ 憲宗實錄㉔ 成化 14 年(1478) 3 月 6 日, [上]350쪽; ㉔ 武宗實錄㉔ 正德 5 年(1510) 9 月 28 日, [上]474쪽; ㉔ 神宗實

형벌을 통해 천문 ‘사습’의 금지를 선포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마련된 것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 입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태(景泰) 2년(1451)에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모옥(毛玉)이 올린 다음과 같은 진언(進言)은 “사람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흘끔 보기만 해도 모두 두렵고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는 맹자(孟子)의 유명한 구절[㉠],²⁰⁾ 그리고 “형벌로써 형벌을 없앤다[以刑去刑]”²¹⁾는 법가(法家)의 경구(警句)[㉡]와 더불어 천문 ‘사습’의 금지령에 담긴 인간관[㉢]을 재삼 상기시켜준다.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을 전용(傳用)하고 천문금지(天文禁書)를 ‘사습’하는 것은 모두 율(律)에서 항상 금지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우민(愚民)들이 이로 인하여 몰래 불계를 도모하다가 현록(顯戮)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으니, ... 진실로 사외(四外)에 [떠도는] 무적(無籍)의 무리들이 천문성상(天文星象)의 그림과 좌도참위(左道讖緯)의 술수를 수장(收藏)하여, 천상(天象)이 징계를 드리웠다고 지칭하면서 [국가의] 기운흥쇠(氣運興衰)를 망론(妄論)하여 인심을 선혹(煽惑)할까 염려됩니다. 스스로 형벌(刑辟)에 걸려드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어찌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법사(法司)에 명하시어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천문·도참서를 수장한 사람들 및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되지 않은 천문·도참서의 소장]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을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방유(榜諭)하십시오.²²⁾

요컨대 모옥은 천문을 익혀서 인심을 선동하고 결국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백성들이 마치 스스로 우물에 빠지는 어린 아이처럼 느껴진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성을 형벌로써 위압(威壓)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에서 백성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언제든지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우민(愚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3. 함천감직(欽天監職) 세습 제도의 변질과 금지령의 완화

錄 萬曆 34 年(1606) 10 月 12 日, [下]634쪽 등.

20) ㉠ 孟子 公孫丑上.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21) 商鞅, “去彊”, ㉠ 商君書 ㉠ (臺北: 商務印書館, 1968).

22) ㉡ 英宗實錄 ㉡ 景泰 2 年 8 月 21 日, [上]247쪽. “吏科給事中毛玉言: 傳用妖書妖言, 私習天文禁書, 俱律有常禁. 邇者愚民因此潛謀不軌, 多罹顯戮. ... 誠慮四外無籍之輩, 收藏天文星象之圖, 左道讖緯之術, 指以天象垂戒, 妄論氣運興衰, 以煽惑人心, 及其自罹刑辟, 何殊赤子入井! 宜勅法司, 通行天下, 榜諭有收藏及知而不發覺者, 重罪之.”

□ 대명률□의 주석가들이 설명하였듯이 “천문을 가지고 길흉을 추험(推驗)하는 것은 범인(凡人)들이 익혀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천문생(天文生)과 음양생(陰陽生)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천문]을 학습하는 자는 또한 장형 100대의 벌을 준 것”²³⁾은 모옥의 비유를 빌려 표현하자면 어린 아이를 우물가로 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주석은 천문 ‘사습’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즉, 천문의 ‘사습’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기관에 속한 천문생과 음양생이 아닌 사람들이 천문을 사사로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그러나 천문의 ‘사습’을 금지한 결과, 국가에서는 흙천감에서 필요로 하는 관료 후보군(候補群)을 흙천감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홍무(洪武) 6년(1373) 태조 주원장은 “흙천감 소속 관료들은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법령과 함께 “그 자손들은 천문과 역법만을 공부해야 하며, 그 이외에 다른 학업을 익힐 수 없다”는 법을 반포함으로써 흙천감의 관료 후보군을 흙천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²⁵⁾ 말하자면 천문 ‘사습’의 금지와 흙천감 직무의 세습은 상보 관계에 있는 ‘동일 차축(車軸)의 양륜(兩輪)’ 같은 것으로서,²⁶⁾ 그 목적은 공히 국가의 천문지식 독점에 있었다고 하겠다.

흙천감 관직의 세습 제도는 천문 ‘사습’의 금지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일찍이 야마다 케이지(山田慶兒)는 “국가점성술[즉, 천문]을 국가의 수중에 독점하려는 정책은, 천문대의 기밀 유지, 천문서적의 소유와 천문 ‘사습’의 금지 이외에도 제3의 정책으로 보완되어야만 비로소 완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⁷⁾ 바꿔 말하면 이 제3의 정책의 보완이 실패했을

23) □ 大明律集解附例□ 卷 12 禮律, 951쪽. “若天文以推驗休咎, 非凡人所習. 故非天文陰陽生, 而私自習學者, 亦杖一百, 故曰罪亦如之.”

24) 이 점에서 Peter M. Engelfriet가 천문의 ‘사습’을 “허가받지 않은 개인들에 의한 천문학의 실행(the practice of Astronomy by unauthorized persons)”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Peter M. Engelfriet, *Euclid in China: The Genesis of the First Chinese Translation of Euclid's Elements Books I-IV (Jihe yuanben; Beijing, 1607) and its Reception up to 1723* (Leiden: Brill, 1998), p. 78의 각주 100을 볼 것.

25) □ 明會典□ 卷 176 欽天監. “凡本監人員, 洪武六年, 令永遠不許遷動, 子孫只習學天文曆算, 不許習他業.”

26) “동일 車軸의 兩輪”이라는 표현은 吳金成, “王朝 交替와 紳士의 向背”, □ 國法과 社會慣行□, 227-228쪽에서 차용했다. 이 표현은 어떠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적 행동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山田慶兒에 따르면 元代의 조정이 채택한 제3의 정책은 “민간의 천문학자를 끊임없이 국가기구 안으로 흡수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흡인해 두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元代에는 첫째로 在野의 천문학자와 천문학 지망자는 시험에 합격하면 天文臺員에 채용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둘째,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推舉 등에

때 천문지식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천문 ‘사습’의 금지령도 제 구실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대 천문 ‘사습’의 금지령을 보완하는 흠천감 관직의 세습 제도는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흠천감 관직의 세습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천문학보다는 유학(儒學)을 본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더 높은 직위까지 승진하고자 했던 천문생과 음양생들은 자신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곤 했다. 흠천감에 남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흠천감 관생(官生) 및 그 자제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흠천감의 지적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었다. 천문관료의 세습이 3세대 이상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이를 뒷받침해준다.²⁸⁾

천문지식을 국가가 독점하기 위해 세운 양대 법령 중에서 ‘흠천감직의 세습’이라는 한 축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른 반대쪽 축에 있는 법령인 천문학습의 금지령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흠천감 관원들의 질적·양적 수준이 미달되자 조정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흠천감의 관료 후보군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외부에서 차출할 생각을 떠올린 순간 이미 국가는 흠천감 관생이 아닌 외부인들의 천문 ‘사습’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셈이다. 실제로 천문역법을 알고 있는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 캐내어 등용하라는 신하들의 요청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다소 장황하지만 그 사정들을 나열해 보자. 천순(天順) 2년(1458), 장흠천감사(掌欽天監事) 예부우시랑(禮部左侍郎) 탕서(湯序)는, 영락(永樂, 1403-1424) 연간에 천하의 술수가(術數家)들을 두루 기용하였지만, 그 이후로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질적·양적 수준이 하락하여 점후(占候)를 하는 데에 결원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천문·역수(曆數)·지리(地理)·명과(命課)에 정통한 자를 군(軍)·민(民)의 구별 없이 선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²⁹⁾ 성화(成化) 16년(1480)에도 전례에 따라 ‘관민자제(官民子弟)’ 중에서 천문역법을 3년 이상 공부한 자들을 선발해서 천문생

의해서 官에 등용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과거제도를 드물게 운용했던 元朝에 있어서 이 방식은 상당히 중요했다” 고 한다. 山田慶兒, 『授時曆の道』, 91쪽.

28) Thatcher E. Deane, “The Chinese Imperial Astronomical Bureau: Form and Function of the Ming Dynasty *Qintianjian* from 1365 to 1627”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9), Chapter 6, “Career Patterns in the Ming Astronomical Bureau,” pp. 353-400. Deane의 논문은 明代 欽天監 官生들의 특권, 학위소지의 가능 여부, 임용과 승진, 근무존속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29) 『英宗實錄』 天順 2年 11月 28日, [上]280쪽. “掌欽天監事禮部左侍郎湯序言: 永樂中, 嘗博收天下術數之人, 流爲數世之用, 迄今年久, 凋落殆盡, 占候缺人. 請詔內外有司, 凡精通天文曆數地理課命之術者, 不分軍民, 起送赴京.”

(天文生)으로 충당해달라는 흠천감의 상주가 있었다.³⁰⁾ 특히 홍치 11년(1498)에는 흠천감을 맡고 있던 태상시소경(太常寺少卿) 오호(吳昊)가 천문·역법·술수에 능통한 사람을 수색하여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술수 중에서도 육임(六壬)·점과(占課)·작귀(灼龜) 등의 특정 분야들은 등용하더라도 국가에 이로운 바가 없으니 지방관들이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홍치제는 그 분야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모두 예부로 올려보내라고 말했다.³¹⁾

천문의 ‘사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천문을 ‘사습’한 자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으면[術業已成]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 흠천감으로 보내어 천문생으로 충당한다”³²⁾는 규정이 ㉔ 대명률㉔에 추가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³³⁾ 흠천감 관원의 자손들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천문 ‘사습’의 금지령도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듯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은 17세기 초 중국에 도래(渡來)하였던 예수회 선교사 우르시스(Sabbathinus de Ursis 熊三拔, 1575-1620)의 눈에도 비교적 선명하게 비춰졌다. 1612년 8월 무렵에 그가 프란시스 파시오(Francis Pasio) 신부에게 보낸 장문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두 가지 분야의 수학(mathematics)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문(*t' ien-wên*)이라고 부르는 것과 둘째는 역법(*li-fa*)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천문은 우리가 점복(fortunetell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천문, 즉 점복은 중국의 법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왕립학교(Royal College)의 수학자(mathematician)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 30) ㉔ 憲宗實錄㉔ 成化 16 年 6 月 12 日, [上]356쪽. “先是, 欽天監奏. 選官民子弟肄習天文曆法已歷三年, 本監據正統年例經奏. 得旨. 考中收充天文生事下禮部. 禮部查成化六年近例復奏. 得旨.”
- 31) ㉔ 孝宗實錄㉔ 弘治 11 年 12 月 3 日, [上]428쪽. “吳昊言: 天文、曆數、陰陽之術, 乃推步觀候及占卜吉凶禍福所繫, 苟術業不精, 則推步有差, 占候無驗. 欲行天下, 訪取精通天文、曆數、陰陽、地理者, 起送備用. ... 送禮部覆議. 宜從所奏. 其觀梅、折字、演禽、相面前定數、六壬、占課、灼龜等末技, 無益於用, 不許妄舉. 上曰: 六壬、占課、灼龜, 果有精通者, 亦訪取之.”
- 32) ㉔ 大明律集解附例㉔ 卷 12 禮律, 952쪽. “私習之人術業已成者, 決訖送欽天監充天文生.”
- 33) 일정 수준 이상의 천문지식을 학습한 자를 欽天監에 채용하는 규정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天順 2년(1458) 禮部左侍郎 湯序가 軍·民을 가리지 않고 天文曆數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할 것을 주청하면서 永樂 연간에 이미 천하의 ‘術數之人’을 두루 등용하였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규정과 유사한 조치는 이미 15세기 초부터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주 28을 볼 것. 이와 거의 유사한 前例는 南宋代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山田慶兒, ㉔ 授時曆の道㉔, 90-91쪽에 인용된 ㉔ 慶元條法事類㉔ 卷 17 斷獄令을 볼 것.

… 왕들은 이 과학(science, 즉 천문과 역법을 모두 포괄하는 수학 일반)을 위해 하나의 관청 또는 특수학교(a bureau or special college)를 설립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오로지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고, 매년 달력을 제작하며, 별과 혜성, 그리고 하늘에서 주야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관측하는 임무만을 맡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한 목적은]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청 또는 특수학교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법의 강력한 제재 하에 금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천문현상의 징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즉, 관청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청과 특수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³⁴⁾

위 인용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천문 ‘사습’의 금지령과 현실 관행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우르시스는 천문지식 전 분야의 학습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했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천문현상의 징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금지되었을 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학습의 자격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천문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비록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한 금지령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대명률□은 황제권력과 그 정통성을 영구히 뒷받침하는 법적인 기반이자 상징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빼거나 보탬 수는 없는 것이었다.³⁵⁾ 금지령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³⁶⁾ 끊임없이 금지령으로부터 자신의 천문 ‘사습’을 정당화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34) Pasquale M. d' Elia, S.J., *Galileo in China: Relations through the Roman College between Galileo and the Jesuit Scientist-Missionaries (1610-164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 65에서 재인용. 여기에 실린 Ursis의 편지에 대해서는 임종태 교수의 敎示를 받았다.

35) 그 대신 사회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법안들은 ‘[條]例’의 형식을 빌려 보완되었다. 예컨대 □ 明史□의 편찬자는 弘治 13년에 □ 問刑條例□가 완성되자 □ 大明律□과 □ 問刑條例□가 병행되어 法網이 조금이나마 치밀해졌다고 평가한다. □ 明史□ 卷 93 刑法志, 2286쪽. “弘治中, … 至十三年, … 於是下尙書白昂等會九卿議, 增歷年問刑條例經久可行者二百九十七條. … 然自是以後, 律例並行, 而網亦少密.” □ 大明律□의 위상과 명대 법률 운용의 특징에 대해서는 John D. Laglois, Jr., J. P. Morgan and Co., Incorporated, “Ming Law,”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76-180을 참고.

36) 명대의 학인들이 천문을 공부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천문과 역법에 관한 문제가 科擧에도 종종 출제되었기 때문이었다. Benjamin A. Elman,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 468-477.

있었다. 이를 위해 명대의 학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논리를 펼쳐야만 했다. 먼저 그 일례로 1425년 홍희제(洪熙帝)의 조칙(詔勅)으로 반포되었다고 전해지는 田 천원옥력상이부(天元玉曆祥異賦)田의 편찬 경위를 이용하는 양상을 검토해 보자.

4. 田 천원옥력상이부(天元玉曆祥異賦)田의 편찬 경위에 관한 두 내러티브

천문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천문의 ‘사습’에 대한 단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겸양(謙讓)의 수사(修辭)를 펼치는 것이다. 가정(嘉靖) 10년(1531) 윤6월, 혜성이 동정(東井)에 출현한 사건을 두고 예부상서(禮部尙書) 이시(李時) 등은 장문의 대책을 올리면서도 자신들은 “상위(象緯)의 학(學)을 잘 알지 못하여 진실로 여러 곡절과 증거들을 두루 인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³⁷⁾ 만력 47년(1619)에 남경의 공부(工部)에서 하급 관료로 일하고 있던 여문룡(余文龍)은 1425년에 홍희제가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田 천원옥력상이부田에 삽화를 곁들인 편집본 田 천원옥력상이도설(天元玉曆祥異圖說)田을 출판한 뒤, “신(臣) 여문룡은 우매하여 점후(占候)의 술법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³⁸⁾

경전과 사서(史書)를 참고하여 천문·역법을 공부하는 것도 금지령의 단죄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경전과 역사 속에 담긴 천문·역법지식은 탐구의 대상인 동시에 천문·역법을 공부하기 위한 훌륭한 참고서였다.³⁹⁾ ‘성인(聖人)의 언사(言辭)’가 담긴 경전과 역사를 배우는 일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실제로 몇몇 유학자들은 금지령에 의해 단죄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천문지식의 출처는 경전과 역사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1517년, 정덕제(正德帝)는 田 문헌통고(文獻通考)田를

37) 田 世宗實錄田 嘉靖 10 年 閏 6 月 29 日, [下]523쪽. “禮部尙書李時等以彗星見上言 … 臣等不諳象緯之學, 固不能旁引曲證.”

38) 余文龍, “序”, 田 大明天元玉曆祥異圖說田 (四庫禁燬書叢刊本), 3쪽. “臣文龍愚昧, 不諳占候之術. 竊見天人感應, 捷若桴鼓, 聖製昭垂, 確若金石.”

39) 江曉原·鈕衛星, 田 中國天學史田, 176-179쪽. 弘治 연간에 進士가 된 潘希曾은 천문역법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유학자들이 보는 책 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潘希曾, “贈潘守固授陰陽正術序”, 田 竹淵集田 卷 6 (文淵閣四庫全書本). “堯命羲和主曆象, 而庶績熙, 舜命重黎司地天, 而人心正. 周以太史正歲年卜日, 馮相氏掌歲月辰日二十有八星之位, 保章氏辨吉凶觀妖祥降豐荒之祲象, 而六典始備, 是皆具乎吾儒之書.”

열람하다가 ‘주장(注張)’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별의 정체가 궁금했던 정덕제는 내각(內閣)에 명하여 황실에 소장된 비서(秘書)와 ㉠ 문헌통고 ㉡ 의 다른 판본에도 ‘주장’이라는 별이름이 보이는지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흠천감에도 이 별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흠천감의 관료들은 ‘주장’이 무슨 별인지 알지 못했다. 정덕제는 내사(內使)를 통해 한림원(翰林院) 관료들에게도 ‘주장’이라는 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림원 관료들은 모두 서로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相視愕然]고 한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가 그들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황제의 하문(下問)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불충(不忠)이지만, 만일 정확한 답을 말했다면 자칫 천문을 사사로이 공부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때 양신(楊愼, 1488-1559)이 등장하여 ㉢ 사기(史記) ㉣ 와 ㉤ 한서 ㉥ 를 인용함으로써 ‘주장’은 ‘유성(柳星)’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은 양신의 대답에 대한 한림원 동료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양신에게 “그대는 진실로 말이 분명하고 또한 박학(博學)하오. 천문을 사사로이 배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걸리지 않다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료들이 감탄한 이유는 양신이 인용한 구절의 출전이 모든 유학자들에게 공개된 ㉦ 사기 ㉧ 와 ㉨ 한서 ㉩ 의 두 정사(正史)였기 때문이다.⁴⁰⁾

또 다른 사례는 만력 12년(1584) 병부 직방랑(兵部職方郎) 범수기(范守己)가 사가(私家)에서 혼의(渾儀)를 제작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범수기의 혼의가 굉음을 울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금지령에 의하면 천문기구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도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러나 범수기는 용감하게도 ㉪ 천관거정(天官舉正) ㉫ 이라는 책을 짓고 자신이 혼의를 제작한 사실을 당당하게 변호했다. 역시 그는 경전과 역사에 실린 천문지식이 이미 지방학교의 도서관에도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지식임을 강조했다.

혹자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천문의] ‘사습’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니 자리에 있는 여러 군자(君子)들은 문왕의 법도를 경시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고 한다. [범수기가 대답했다.] “... 소황제(昭皇帝, 즉 洪熙帝)께서 친히 신한(宸翰)을 닦으시고, ㉬ 천원옥력(天元玉曆) ㉭ 을 군신(群臣)들에게 반포하셨으며, ... 또한 여러 사서(史書)들이 학관(學官)에 널려 있으면서 별자리와 하늘의 분야(分野)에 대하여 말한 것이 사람의 이목에 명백히[章章] 드러나 있는데, ... 법리(法吏)들이 그것을 어찌 금지할 수

40) 楊愼, “注張”, ㉠ 升菴集 ㉡ 卷 74 (文淵閣四庫全書本). “正德丁丑歲, 武廟閱文獻通考, 天文星名有注張, 因命內閣取祕書通攷別本又作注張. 顧問欽天監, 亦不知爲何星也. 內使下問翰林院, 同館相視愕然. 愼曰: 注張柳星也. ... 因取史記漢書二條, 示內使以復. 同館戲曰: 子言誠辨且博矣. 不涉於私習天文之禁乎!”

있겠는가!”⁴¹⁾

범수기의 발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홍희제께서 친히 天원옥력 天元玉曆을 군신(群臣)들에게 반포하셨으니” 라고 말한 구절이다. 범수기가 말한 天원옥력 天元玉曆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天원옥력상이부 天元玉曆상이부를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다. 天원옥력상이부 天元玉曆상이부는 일종의 천문서적으로서, 황제가 이를 친히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하여 읽어보기를 권하였다면, 이는 天원옥력상이부 天元玉曆상이부를 하사받은 ‘군신’들에게는 천문 ‘사습’의 금지령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天원옥력상이부 天元玉曆상이부의 반포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天명실록 天名實錄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 책의 반포 경위는 다른 문헌들에서 산견(散見)되는데, 먼저 서로 다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두 기록들을 비교·검토해보자.

(A) 홍희 원년(1425) 정월 [양사기(楊士奇)는]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승진하고 전에 맡았던 직분도 겸하게 되었다. [홍희제는] 天원옥력부(天元玉曆賦)를 하사하시며 칙유하셨다. “천도(天道)와 인사(人事)는 서로 판연히 분리된 적이 없었으니 이쪽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저쪽에서 응함이 있다. 짐이 어렸을 적에 황조(皇祖)께서 수신하며 하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신 이후로 아직까지 [황조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간단한 리(理)는 좌우보신(左右輔臣)에 해당하는 경들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4월 보름, 황제가 봉천문(奉天門)에 행어(幸御)하시어 건의(蹇義)·하원길(夏原吉)·양영(楊榮) 및 양사기(楊士奇)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간밤에 성변(星變)이 일어난 사실을 경들은 아는가?” 라고 물으시며 탄식하시기를 “천명이로다!” 라고 하셨다.

42)

(B) 홍희제가 하루는 양사기(楊士奇) 등에게 “간밤에 별들의 모양(星象)을 보았는가?” 라고 물었다. 양사기 등은 [성상(星象)을] ‘보지 못했다’ 고 대답한 것이

41) 范守己, “序”, 天官舉正. “或謂國家有私習明禁, 在位諸君子不得而輕捍王文網也. [守己曰] … 昭皇帝親灑宸翰, 頒天元玉曆于群臣, … 諸史列在學官, 言星野者章章在人耳目間也, … 法吏惡得而禁之?” 史玉民, “清欽天監管理探蹟”, 54 쪽에서 재인용. 1510년 天文便覽의 서문을 집필한 夏良勝도 유학자들에게까지 금지령이 적용된다면 學官에 있는 洪範과 周易부터 없어져야 하고 天文志가 실린 正史의 간행도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夏良勝, “天文便覽叙”, 東洲初稿 卷 10 (文淵閣四庫全書本). “我聖祖患人狃於推步之說, 有至妄談禍福而憤亂黔首者, 是以禁之. 若儒者窮理博物之資, 而曰亦其所禁, 則洪範周易不得列於學官, 而諸史天文之志, 尤在所宜刊去也.”

42) 廖道南, “華蓋殿大學士楊士奇”, 殿閣詞林記 卷 1 (文淵閣四庫全書本). “洪熙元年正月, 陟兵部尙書兼職如故, 賜天元玉曆賦諭曰: 天道人事, 未嘗判殊, 有動於此, 即應於彼. 朕少侍皇祖教以慎修敬天, 未嘗敢怠. 是書言簡理, 當左右輔臣, 亦當知之. 四月既望, 上御奉天門, 召蹇義夏原吉楊榮及士奇諭曰: 夜來星變卿等知之乎? 乃歎曰: 天之命也.”

아니라 천문에 대하여 아예]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황제는 “천·지·인에 통달한 사람을 일컬어 유학자라고 하는데, 경들은 어째서 천상(天象)을 모르는가?” 라고 다시 물었다. 양사기는 “국조(國朝)가 천문을 사사로이 학습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은 감히 [천문을] 익히지를 않았습시다” 라고 대답했다. 홍희제가 말하기를 “이것[□ 대명률□ 의 그 조항]은 민간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경들은 국가의 대신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흥망을 같이 하는데, 어찌 [천문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겠나!” 라고 했다. 이에 □ 천관옥력상이부(天官玉曆祥異賦)□ 를 지어 못 신하들에게 반사(頒賜)하였다.⁴³⁾

(A)는 요도남(廖道南, ?-1547)이 기록한 □ 전각사림기(殿閣詞林記)□ 의 일부이며, (B)는 역시 비슷한 시기에 관직에 있었던 왕오(王鏊, 1450-1524)가 퇴직하여 낙향했을 때, 그동안 모아둔 기록을 가지고 편집한 문집에 수록된 내용이다. (A)의 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홍희제는 홍희 원년 정월에 □ 천원옥력부□ 를 반포하면서 좌우의 보신(輔臣)들도 천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간밤에 성변(星變)이 일어난 것을 아느냐고 묻고는, 이것이 천명이라는 외마디 탄식만을 남겼다. 이 기록에 의하면 □ 천원옥력부□ 의 하사와 좌우보신들에 대한 칙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변의 발생은 □ 천원옥력부□ 의 하사 및 칙유와는 서로 동떨어진 사건으로 서술되었다. 하지만 (A)의 기록자인 요도남(廖道南)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오(王鏊)는 이 사건을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황제는 먼저 신하들에게 간밤에 성상(星象)을 보았느냐고 물었으며, 신하들이 □ 대명률□ 의 금지령을 두려워하여 천문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 대명률□ 의 금지령은 민간에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그리고는 □ 천관옥력상이부□ 를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록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의 글에서는 □ 천원옥력부□ 의 하사 → 좌우보신에 대한 칙유 → 성변의 발생이라는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으며, 성변의 발생은 앞선 두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반면에 (B)의 글에서는 (A)와는 달리 사건이 성상에 대한 물음 → 대신들에 대한 황제의 효유(曉諭) → □ 천관옥력상이부□ 의 반포라는 역순으로 전개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유기성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 두 기록의 차이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던져준다. 첫째, (A)와 (B)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가? (B)는 사태의 전개 과정을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로 매끄럽게 서술하였지만, 사건의 주변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A)에 비해서는

43) 王鏊, □ 震澤長語□ 卷上 (文淵閣四庫全書本). “仁廟一日語楊士奇等, 見夜來星象否. 士奇等對不知. 上曰: □ 通天地人之謂儒, 卿等何以不知天象?□ 對曰: □ 國朝私習天文律有禁, 故臣等不敢習.□ 上曰: □ 此自爲民間設耳. 卿等國家大臣, 與國同休戚, 安得有禁!□ 乃以天官玉曆祥異賦賜羣臣.”

허술하다. 반면 (A)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 황제와 신하들의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등 당시의 정황묘사에서 (B)보다 자세하다. (A)의 필자였던 요도남은 정덕 연간에 편수역관 시강학사(編修歷官侍講學士)를 지내면서 궁궐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지은 四庫全書總目提要 역시 전각(殿閣)·궁방(宮坊)·대성(臺省)의 여러 신하들에 관련된 옛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자의 해제는 (A)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다.⁴⁴⁾

그러나 (A)와 (B)의 진위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다. (A)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왜 (B)의 서술자는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선택하였을까? 나는 그 이유를 신하들에 대한 칙유의 내용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명확한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적기(摘記)해 보겠다.

(A): 좌우보신(左右輔臣)에 해당하는 경들도 마땅히 이것[천문]을 알아야 한다.

(B): [천문의 ‘사습’을 금지하는] 四庫全書總目提要 의 그 조항은 민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A)의 기록은 천문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범위를 ‘좌우보신(左右輔臣)’이라고만 언급했다. 주지하듯이 ‘보신(輔臣)’은 명대 재상급 관료들[內閣大學士]에게만 붙이는 별칭이다.⁴⁵⁾ 따라서 (A)의 기록에 의하면 천문을 알 수 있는 권리는

‘보신’ 들까지만 허용되었지만, (B)의 기록자는 四庫全書總目提要 의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천문을 알아서는 안 되는 부류는 민간”이라는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천문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민간을 제외한 모든 ‘관인(官人)’으로 확대시켰다. 사실 관인들의 천문학습을 인정한 (B)의 서사구조는 관인의 범주마저도 초월하여 모든 ‘사인(士人)’들의 천문학습을 허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명 중기 이후 관직경력자[紳]와 학위소지자[士]가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인들은 “평생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신(紳)’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관의 예우를 받을 정도로 사실상 ‘관(또는 신)’과 ‘사’의 계층 감각은 매우 모호했기 때문이다.⁴⁶⁾ 결론적으로 말해서 (B)의 필자는 이와 같은 서사구조를 통해서 四庫全書總目提要 에 구애받지 않고도 민간이 아닌 모든 사인들이 천문을 학습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44) “殿閣詞林記二十二卷”, 四庫全書總目提要 卷 122 史部傳記類. “... 道南自正德辛巳, 改庶吉士, 由編修歷官侍講學士, 在詞垣最久嫻習掌故, 因集詞林殿閣宮坊臺省諸臣舊事, 分類記載以成是編其例.”

45) 龔廷明, 中國歷代職官別名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657쪽.

46) 吳金成, “明代的國家權力과 紳士”, 國法과 社會慣行, 181-205쪽. 특히 190쪽을 볼 것.

□ 천원옥력상이부□ 의 편찬 경위의 대강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몇몇 학인들에게는 (A)보다는 (B)가 훨씬 더 그럴 듯하게 들렸던 것 같다. (A)의 내러티브를 반복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B)의 내러티브는 왕오의 저술에 등장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嘉靖) 연간에 □ 하간부지(河間府志)□ 를 편찬한 진사(進士) 번심(樊深)은 (A)가 아닌 (B)의 이야기를 ‘선택’ 하였으며,⁴⁷⁾ 청초(淸初)의 고염무(顧炎武, 1613-1682) 역시도 □ 하간부지(河間府志)□ 에 실린 (B)와 동일한 서사구조의 전승을 ‘선택’ 했다. 특히 번심이 이 고사에 대하여 논평한 부분을 보면 학인들이 (B)를 더 선호했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율서(律書)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자면, 성인(聖人, 즉 홍무제)의 근심하는 바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서(制書)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자면 성인(즉, 홍희제)의 식견이 원대함을 알 수 있다.⁴⁸⁾

번심의 평가는 ‘율서(律書)’와 ‘제서(制書)’, ‘깊은 근심’과 ‘원대한 식견’이라는 뚜렷한 대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깊은 근심을 율서에 반영한 홍무제도 성인이고, 원대한 식견을 제서에 반영한 홍희제도 성인이지만, 명대의 학인들은 후자의 성인을 더 선호했다. 더구나 실록(實錄)의 편찬자들은 홍희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천상을 깨달아 알았으며, 즉위 후에는 금중(禁中)에 대(臺)를 설치하여 몸소 천상(天象)을 보고 길흉의 감응을 예언하였으며, 재변(災變)을 당하면 반드시 근심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였다.⁴⁹⁾ 홍희제가 생전에 보여준 태도는 모든 유학자들이 희망하는 유가적 황제상(儒家的皇帝像)의 전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6세기 말이 되면 “이 [법은] 민간을 위해 제정한 것일 뿐”이라는 부분도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1599년에 병서(兵書)의 일종인 □ 등단필구(登壇必究)□ 의 편찬자는 “역대 황제들[祖宗]께서 [천문의 사적인 학습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요술(妖術)을 함부로 말하고 인심을 선동하는 자[妄言妖術簧瞞人心者]들 때문에 마련한

47) 樊深, “天文志”, □ 嘉靖河間府志□ 卷之一 (四庫全書存目叢書本), 398-399쪽.

“星曆之學, 亦臣子所當知也. 愚初讀律書, 見私習天文者有禁, 後讀制書, 又見仁廟語楊士奇等曰: □ 此律自爲民間設耳. 卿等安得有禁! □ 遂以天官玉曆祥異賦賜羣臣.”; 顧炎武, “天文”, □ 日知錄□ 卷 30. “河間府志曰: 愚初讀律書, 見私習天文者有禁, 後讀制書, 見仁廟語楊士奇等曰: 此律自爲民間設耳. 卿等安得有禁! 遂以天元玉曆祥異賦賜羣臣.”

48) 樊深, 같은 글. “是, 由律書之言觀之, 乃知聖人之所憂者深, 由制書之言觀之, 乃知聖人之所見者大.”

49) □ 仁宗實錄□ 洪熙 元年 7 月 2 日, [上]135쪽. “少侍太祖, 曉食天象, 長益探究, 或欽天監所陳有諱避者, 輒見窮詰. 既卽位, 作臺禁中, 時自觀察而預言休咎之應多奇中, 遇災變必警飭.”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⁵⁰⁾ 이 구절 속에는 민간의 천문 ‘사습’ 자체는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이 주장은, 천문서적의 출판을 통해 천문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사(士)’ 계층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명대 후기 학술문화의 주목할 만한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천문을 공부하는 일반인들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무리’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한, 민간의 천문 ‘사습’은 여전히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천문의 ‘사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변은 일반인들이 천문을 공부하더라도 국가질서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5. 경성(警省)하는 소인: 천문서적의 출판과 그 정당화 논리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부터 명대의 학인들은 천문의 학습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정 내부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명초(明初)에는 천문지식의 ‘사습’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원칙상 제왕과 흠천감 관료들만이 천문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 □ 명회전(明會典)□에 의하면 일식·월식이 일어나면 흠천감에서는 점서(占書)에 따라 그 의미를 황제에게 보고해야만 했는데,⁵¹⁾ 명초의 황제들은 특히 흠천감의 보고에 따라 관료들에게 일정한 행동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물론 황제 스스로 점서를 직접 읽어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반면에 관료들은 재이와 관련된 대책을 상주하더라도, 천변재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점서’를 자기 입론(立論)의 근거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⁵²⁾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50) 王鳴鶴, “輯天文說”, □ 登壇必究□ 卷之一 (續修四庫全書本), 12쪽. “王鳴鶴曰: 天文微妙難言. 矧我朝有私習之禁, 而又不容以易言者也. 天下臣民恪遵憲制, 無敢軼越, … 雖然祖宗之禁, 不過爲妄言妖術簧瞞人心者設耳.”

51) □ 明會典□ 卷 176 欽天監. “凡推算日月交食, 本監先期備開分秒時刻, 并起復方位, 具奏. 禮部通行內外諸司, 臨時救護. 食畢, 本監仍按占書, 具奏.”

52) □ 明實錄□ 을 검토해보면 1500년 이전까지 흠천감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관료들이 올린 재이대책 중에서 점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天順 元年(1457)에 재이대책을 올린 禮部右侍郎 湯序는 “欽天監掌監事”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占書를 인용하는 사례는 1건밖에 남지 않는다. □ 宣宗實錄□ 宣德 8年(1433) 閏 8月 9日, [上]187쪽. “行在禮部尚書胡瑩言. □ 欽天監奏景星見. 臣考之占書….” □ 英宗實錄□ 天順 元年 6月 7日, [上]271쪽. “欽天監掌監事禮部右侍郎湯序等奏. □ 雹者陰脇陽也, 盛陽雨水湯熱, … 占書曰: …, 又曰: ….”

재이대책을 올렸던 대부분의 관료들은 경전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흙천감의 보고를 재인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정덕—가정 연간(16세기 전반부)에 걸쳐서 흙천감과 무관한 인물들 중에서도 점서·풍각서(風角書)·상이지(祥異志) 등을 인용하여 재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⁵³⁾

조정 내부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변화가 사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점성술을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15세기 말부터는 개론적인 천문지식을 담은 서적들을 입수하여 필사하는 현상들이 발견된다. 경전과 역사를 통한 천문학습에 한계를 느낀 유학자들은 열심히 천문서적을 구하려고 했다. 경전과 역사에 실린 천문지식은 천문을 학습하기 위한 훌륭한 교과서이기도 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구서(工具書)와 해설서(解說書)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많았기 때문이다. 홍치 3년(1490)에 田 天文鬼料竅(天文鬼料竅)을 필사했다고 밝힌 장경순(張景純)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경전에 나오는 어려운 천문지식을 접하고나서 당혹스러워했던 장경순은 참고서적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자신의 물음에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가까스로 “田 보천가(步天歌)田 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루 다니며 그것을 찾아서 구했는데, 어떤 것은 그림은 있지만 설명이 없었으며, 어떤 것은 설명은 있어도 주석이 없는” 조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장경순은 그 정도라도 입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했다.⁵⁴⁾

장경순이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의 유학자들이 구득할 수 있는 서적들은 수량도 크게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입수한 책들의 질적 수준도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1532년에 田 상위휘편(象緯彙編)을 저술한 한만종(韓萬鍾)은 천문과 상이(祥異)에 관한 학문이 금지된 이후로는 전범이 되는 텍스트마저도 없어서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기(傳記)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田 문헌통고 田 등의 유서(類書)들을 참고하여 천문을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한만종 자신이 “田 문헌통고田 속에서 상점(象占)의 정확한 출전을 찾아보려고 해도 편장(篇章)이

53) 田 武宗實錄田 正德 16 年(1522) 正月 1 日, [上]494쪽. “是日寅刻, 直隸太平府東南有星如火, 變白色 … 巡撫都御史李克嗣奏曰: 按占書 ….” 그는 이외에도 田 春秋考異田 및 익명의 風角書 등 자신이 보았던 占書들의 종류들을 몇몇하게 밝혔다. 이후 非 흙천감 관료들이 祥異志 등의 占書를 직접 보았다고 밝히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田 世宗實錄田 正德 16 年 6 月 23 日, [下]498쪽; 田 世宗實錄田 嘉靖 11 年(1532) 8 月 26 日, [下]525쪽 등을 볼 것.

54) 張景純, “天文鬼料竅序”, 저자 미상, 田 天文鬼料竅田 (四庫全書存目叢書本), 124 쪽. “予嘗讀諸經傳, 仰而觀, 俯而思, … 無書可印, 無人可質, 卒付之無可奈何而已. 及聞有步天歌者, 歷訪求之, 或有圖而無文, 或有文而無註, 取而讀之. … 近復得於 … 李公家, 頗爲詳備, 懇求錄之. 然有圖缺註, 或有悞, 而亦不敢輕加攷改. … 嗚呼! 它日好事者得之, 安知不爲目前之一快, 而如吾今日之所得也哉!”

방대하여 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고 말한 것처럼 유서의 이용은 매우 불편했다.⁵⁵⁾

장경순과 한만종이 각각 필사하고 편찬했던 두 책의 서문은 15세기말부터 16세기초 사이의 지식인들에게 천문지식의 수요가 높았던 반면, 천문서적의 공급은 부족했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천문지식에 대한 수요는 출판업계의 활성화를 기다리면서 복류(伏流)했다.⁵⁶⁾ 가정 연간(1522-1566) 이후부터 명대의 출판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출판업자들은 사인들의 지적 취향과 수요에 부응하여 천문서적을 출판하기 시작했다.⁵⁷⁾ 천문서적들은 앞에서 살펴본 田 天문귀료규田 와 田 보천가田 등 천체의 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점차 점성술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로까지 확장되었다.⁵⁸⁾ 서학모(徐學謨)는 가정 연간에 일어났던 전대미문의 현상에 대하여 “천문서적, 예컨대 田 관상완점(觀象玩占)田 같은 책들은 원래 모두가 금서였다. [그러나] 가정 연간에 책방들이 이러한 책들을 등사[抄謄]하여 팔기 시작하니 사대부의 가정들도 왕왕 천문서적을 소장했다” 고 회상했다.

59)

일단 판매가 가능해진 천문서적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독서할 수 있는 여가를 갖춘

55) 韓萬鍾, “敍象緯彙編”, 田 象緯彙編田 (四庫全書存目叢書本), 106쪽. “或曰天文祥生月, 爲時所禁, 然則古之所以正黃道察發斂授人時頒曆朔者, 豈一切廢其典哉! 是非上天所以垂象示人之意也. 故其雜出於傳記者, 亦多. 如曆象躔度次舍昏旦中星之類, 無由領悟. … 愚也詞章記誦, 拘攣於所見, 無以知其象占之所在, 顧通考篇章浩瀚, 覽者病焉.”

56) 명대의 출판문화를 연구한 논자들 중에서 16세기, 특히 가정 연간 이후부터를 상업출판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해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勝山稔, “明代における坊刻本の出版状況について—明代全般の出版數から見る建陽坊刻本について”, 田 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にわたり田 (東京: 二玄社, 2004), 84쪽과 88쪽에 실린 그래프들은 가정 연간 이후에 일어난 서적출판의 급증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57) 田 天元玉曆祥異賦田 의 반포가 가정 연간의 천문서적 출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황실 주도로 출판된 서적은 곧바로 사인들의 장서 목록에 편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100여 년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차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례로 1461년에 편찬된 田 大明一統志田 는 분량이 방대하여 개인 출판업자에 의해 출시되기까지는 40여 년이 걸렸지만, 1443년에 편찬된 田 五倫書田 는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Timothy Brook, “Communications and Commerce,” in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840-892, 특히 pp. 862-863.

58) 만력 말년에 출판된 田 天文秘略田 의 편집자였던 胡獻忠은 천문서적의 출판경향의 변화를 잘 지적했다. 胡獻忠, “重訂天文秘略說”, 胡獻忠 輯, 田 天文秘略田 (四庫全書存目叢書本), 351-352쪽. “然非忠之私刻也, 古有鬼料竅、步天歌之刻, 近有登壇必究、戎事類占之梓.”

59) 각주 9를 볼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입하여 읽어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⁶⁰⁾ 유학자들의 천문지식은 만력 연간에 더욱 하향 이동하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많은 사인들이 출판업자로 직종을 전환하게 되면서부터 유사(儒士)와 상고(商賈)의 계층구분은 갈수록 모호해졌다.⁶¹⁾ 이제는 “사민(四民)이 편람(便覽)할 수 있는” 실용백과사전이었던 일용유서(日用類書)에도 천문지식이 포함되었다.⁶²⁾ 최소한 15세기 중엽까지 증보된 여러 판본의 日 사림광기日 에는 천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천변재이(天變災異)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명말에 이르면 그동안 정치와 관련된 길흉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사적인 학습이 금지되어 왔던 천변재이가 일용유서에 버젓이 포함된 것이다.⁶³⁾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누구나 천문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된 초유(初有)의 사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던져준다. 천문지식의 학습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개방된 순간, 천문 분야는 ‘제왕의 통치’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더구나 日 대명률日 은 혹자가 천문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함부로 예언하여 혹세무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의 ‘사습’을 금지하지 않았던가? 천문서적의 필자들은 ‘범법(犯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어떠한 식으로 변호했던 것일까?⁶⁴⁾ 나는 이 시기에 출판된 천문서적들의 서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60) 명대 후기 서민 독자층(common reader)의 출현과 리더십(readership)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Anne E. McLaren, “Constructing New Reading Publics in Late Ming China,” in Cynthia Brokaw and Kai-wing Chow, eds., *Printing and Book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 152-183을 볼 것.

61) 명대 후기의 저명한 문인이었던 歸有光(1506-1571)은 新安 지방의 경우 사대부들조차도 상업에 투신하는 반면, 상인은 詩書를 業으로 삼고 사대부와 교유하기를 즐기는 것을 보고 ‘士’인 동시에 ‘商’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歸有光, “白菴程翁八十壽序”, 日 震川集日 卷 13 (文淵閣四庫全書本). 이 시기에 ‘士商’이라는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출판업계에서는 사인과 상인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井上進, 日 中國出版文化史日, 14장과 18장; 大木康, 日 明末江南の出版文化日, 4장과 5장 등을 참고.

62) 일용유서에 대해서는 酒井忠夫, “明代の日用類書と庶民教育”, 林友春 編, 日 近世中國教育史研究一その文教政策と庶民教育日 (東京: 國土社, 1958), 25-154쪽을 참고. 일용유서 속의 천문지식에 대한 개괄은 吳蕙芳, 日 萬寶全書一明清時期的民間生活實錄日 (臺北: 國立政治大學出版社, 2001), 115-130쪽을 참고.

63) 陳元靚, 日 事林廣記日 (至元刻本), 2-8쪽. 至元刻本 日 事林廣記日 의 천문지식 서술은 명 중기까지도 증보없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胡道靜, “附錄: 1963年中華書局影印本前言”, 陳元靚, 日 事林廣記日 (北京: 中華書局, 1999), 563-565쪽을 참고. 14세기 중엽의 日 事林廣記日 와 1597년에 출판된 日 五車拔錦日 이라는 일용유서 천문문의 서술 내용을 대조한 다음의 표를 참고할 것.

64) 이 점에 대해서 Timothy Brook은 “많은 통속적인 독자들이 미래를 읽는 방법을 알기 원했고, 일용유서의 천문지식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돈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만력 25년(1597)에 출판된 占 戎事類占(戎事類占)은 군사행동과 관련된 천문현상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의 후서(後序)를 지은 채정무(蔡正茂)는⁶⁵⁾

“(천문에 관한) 점서(占書)는 사람이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함으로써 천문지식의 공개에 찬성하였다. 군사(軍事)와 관련된 천문지식은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린 중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천문지식을 알지 않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놓았지만,⁶⁶⁾ 주목되는 것은 그 앞부분이다.

성인이 역법을 지으시고 시절을 밝히신 행적이 위대하시니, 길흉을 보고 나아갈 바와 피할 바를 결정하며, 수신하고 반성하기를 힘쓰며, 하늘이 베푼 것을 잘 이어받을 뿐이다[善承天施]. [그러나] 요사이 이리러서는 하늘과 사람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뿐만 아니라 저[彼]와 나[己]를 준엄하게 구별하여, 이에 천문에 금지령이 내려졌으니 [말하자면] 낫물이 흐르는 것을 막은 셈이다. 하늘이 나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므로 점서를 사람들에게 알 수 없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⁶⁷⁾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문의 ‘사습’을 금지시켰지만, 채정무가 보기에 그것은 저와 나, 즉 천문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채정무는 왜 하필 천문의 학습을 금지시켰는지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는 채정무 자신이 보기에 천문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채정무의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역시 명말의 사인이었던 사존인(謝存仁)의 입장을 분석해보자.⁶⁸⁾ 그는 만력 43년(1615)에 그의 우인(友人) 호헌충(胡獻忠)이

될 만한 정보는 무조건 출판하는 기업가들은 법률적인 결과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 설명하기도 한다. 티모시 브룩, 占 靚략의 혼돈: 명대의 상업과 문화(이산, 2005), 218-222쪽.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명대 후기에 출판된 천문서적의 저술가들이 천문의 ‘사습’을 금지하는 占 大명률占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의식했다는 점, 그리고 국법으로부터 자신의 천문학습과 저술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펼쳤던 노력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65) 채정무는 만력 13년(1585) 湖廣의 향시에 합격하여 知縣까지 올랐던 전형적인 관료사대부였다. 占 湖廣通志 卷 35 選舉志 (文淵閣四庫全書本).

66) 蔡正茂, “戎事類占後序”, 李克家, 占 戎事類占 (四庫全書存目叢書本), 345쪽. “乃行事之最切于占者, 莫如兵. 何者? 軍國重務死生勝敗存亡之所屬, 不可不知也, 則李君戎事類占之作, 可少緩乎!”

67) 위의 글. “聖人作曆明時大者, 視吉凶, 決趨避, 勉修省, 善承天施而已. 輒近世既岐天人, 尤岐彼己, 乃使天文有禁, 障川爲通. 天之示我, 而何必畏人知, 則占書之不可不使人知也, 必矣.”

68) 謝存仁 역시 채정무와 마찬가지로 만력 23년(1595)에 진사에 급제하여 雲南巡撫까지 올랐던 전형적인 학인관료였다. 占 道光徽州府志 卷十二之二 人物志 (中國地方志集

편집(編輯)한 ㉠ 천문비략(天文秘略)㉠ 의 중정판(重訂版) 서문에서, 천문의 ‘사습’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천문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상식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 不可使知]”는 ㉠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마치 공자(孔子)의 가르침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처럼 서술했다.⁶⁹⁾ 하지만 이어서 그는 이 책이 만민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말했다.

무릇 길흉은 상(象)을 통해서 알려지며, 응징은 사람을 통해서 초래된다. 군자는 그것[즉, 길흉]을 관찰하며, 소인은 그것을 성찰한다[小人省焉]. 어떤 미묘함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어떤 기미도 전조(前兆)가 되지 않음이 없으니, [사람들은] 어찌하여 반드시 추연(鄒衍)이 하늘에 대해서 논하고 반표(班彪)가 [천문에 관한] 논설을 저술한 이후에야 [비로소] 현묘한 천상(天象)이 틀리지 않음[不爽]을 알았겠는가. 그런즉 이 학설[즉, 천문]은 비밀스러우면서도 비밀스럽지 않으며[秘而不秘], 기략(機略)[인 것 같으면서도] 기략이 아니니[晷而不晷], 온 세상[宇宙]에 행해지는 것이 가하다.⁷⁰⁾

사존인은 ㉠ 대명률㉠ 의 이념에 일견 찬성하면서도 천문지식이 온 세상[宇宙]에 유통되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천문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길흉의 조짐이 일견 비밀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그것은 이미 만민에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사람들이 지은 천문서적을 통하지 않고서도 천문이 알려주는 길흉을 알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미 ‘공개된 비밀’의 유통을 구태여 금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문현상에 나타난 전조와 응징을 여러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소인의 존재가 상존하는 한 천문 ‘사습’의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천문서적의 유통 역시도 마땅히 금지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인이 천문을 하게 되면 흉한 것을 가리켜 길하다 하고, 나쁜 것을

成本), 434쪽을 참고할 것.

69) 謝存仁, “重訂天文秘略序”, 胡獻忠 輯, ㉠ 天文秘略㉠, 348쪽. “我朝令甲天文不得私習於家, 立司天氏, 以統天治曆授時之外, 不多洩. 第恐邪說誣民攪亂觀聽, 亦 ㉠ 民可使由, 不可使知㉠ 之意.” 그가 인용한 ㉠ 논어㉠ 태백편의 구절은 역대로 그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희의 경우에는 이것을 ‘愚民化’ 정책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지켰다. 黎靖德 編, “論語”, ㉠ 朱子語類㉠ 卷 35 (北京: 中華書局, 1986), 907쪽. “問: ㉠ 不可使知之. 曰: ㉠ 不是愚黔首, 是不可得而使之知也. … 曰: 曰: ㉠ 呂氏解㉠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云: ㉠ ㉠ 不可使知㉠ . 非以愚民, 蓋知之不至, 適以起機心而生惑志也. ㉠ 此說亦自好. ㉠ ”

70) 謝存仁, “重訂天文秘略序”, 349쪽. “夫吉凶以象告, 徵應以人召. 君子觀焉, 小人省焉. 無微不著, 無機不兆, 何必鄒衍談天, 班彪著論, 而後知玄象之不爽乎! 則謂是說秘而不秘, 晷而不晷, 行之宇宙可也.”

가리켜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혹세무민하기에 족하다”는 뿌리 깊은 관념 그 자체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존인의 언급 가운데 “소인은 그것을 성찰한다[小人省焉]”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삽입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단서는 그의 벗이었던 동시에 □ 천문비략□의 직접적인 편집자이기도 했던 호헌충의 해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따라 전개되었다. 그는 우선 천문이 제왕의 통치를 위한 학문임을 인정했다. 칠정(七政)이 갖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람[人]’으로 하여금 재상(災祥)과 풍흉의 응험(應驗)을 알게 함으로써 “문을 나서지 않고서도 구주(九州)와 사이(四夷)의 바깥을 한히 비추어 선책(善策)을 행하고 패국(敗局)에 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천문을 알고 가만히 앉아서 구주와 사이를 비출 수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인주(人主), 즉 제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흠찬감을 세워 천문을 담당하는 기술관료들에게 천문지식을 전달시킨 역대 제왕들의 취지 자체는 호헌충 스스로도 일단 수긍한 것처럼 보인다.⁷¹⁾

그러나 그는 곧바로 국가가 천문지식을 독점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천문의 학설이 천하에 밝게 드러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온한 무리들이 간혹 한두 가지 신기한 현상을 보고 멋대로 사설(邪說)을 퍼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심이 바르지 않게 되어 화란(禍亂)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⁷²⁾ 세간에 요언(妖言)이 난무할수록 올바른 천문지식이 공개되어야만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호헌충 자신이 천문서적을 집필한 의도 역시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행위와 같은 천문지식의 공개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에 또한 … 이 책을 각서(刻書)하는 가운데, 그 점후(占候)에 따라서 그 성상(星象)과 전차(躔次) 및 도수(度數)를 기록하되, 전반부에서는 큰 강령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도판을 연계시켰다. [그럼으로써]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은 길흉을 미리 알아서 서둘러 대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간악한 사람들도 또한 어떤 현상이 어떤 일에 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징험(徵驗)이 이미 묵묵히 저 창천(蒼天)에 정해져 있으므로, [징험을] 조금이라도 엄폐하거나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또한 깨우쳐 돌아보고 살피는[警省] 바가 있어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할 것이니, 거의 모든 사설이 사그라지고 인심이 바르게 될 수 있어, 국가의 화란도 혹 그칠 수 있으리라!⁷³⁾

71) 胡獻忠, “重訂天文秘略說”, 351쪽. “迺其日月五星之度數, 昭昭然懸象, 以示人者, … 盖使人緣象, 以究其理, 據理以占其應, 察機祥, 驗豐凶, 知得失, 不不出戶, 而燭照九州四夷之外, 于以行其善, 而備其敗云爾! 我朝設欽天監, 以司天用爲專業, 學士家莫得習焉.”

72) 같은 글. “末流之弊, 遂令天文之說不明於天下, 而不逞之徒, 間或窺見一二玄象, 漫爾倡爲邪說, 簧鼓愚民. 蓋人心之不正, 而禍亂之相尋, 所從來矣.”

73) 같은 글. “茲又◆是書之刻中間, 按其占候, 紀其星象躔度, 前畧舉大綱, 而後各系之

호헌충은 자신의 천문서적이 총량(忠良)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호헌충의 책은 하늘이 보여주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전조와 응징을 숨김없이 드러내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악한 사람들이 ‘창천의 징험’을 무시하는 한 “사설이 사그라지고 인심이 바르게” 되는 효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면, 호헌충이 기대했던 화란의 종식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마련되어야만 했다. 비록 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이 나타내는 징험을 보고 경계하고 반성[警省]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호헌충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이 바로 앞서 사존인이 언급한 “소인은 그것을 성찰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이다. 즉, 호헌충과 사존인이 전제하고 있는 소인은, 천문을 알고 그 지식을 악용하여 흑세무민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천문현상에 명징하게 드러나 있는 전조와 징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천문지식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왜 굳이 구별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채정무, 그리고 소인은 천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기 때문에 천문지식이 널리 유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존인, 그리고 진정한 천문지식의 공개를 통해 간악한 무리들의 경계와 자성(自省)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화란의 종식을 기원했던 호헌충의 입장은 모두 같은 노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맺음말

명대의 천문학사(天文學史)에 관한 기존의 관점은 천문 ‘사습’의 금지령이 미친 부정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과장해 왔다. 애초에 천문 ‘사습’의 금지는 흠천감에 소속된 관생만이 천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흠천감 관직의 세습을 통해서만이 완결성을 갖추게 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사실 흠천감 관직의 세습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정기적으로 흠천감 외부의 인적 자원들을 끌어와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흠천감에 소속되지 않은 학인들의 천문 ‘사습’을 허용해야만 했다. 이 단계에서 천문 ‘사습’의 금지령은 소인이 천문지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이념만을 남긴

以圖。俾忠良者，豫識休咎，而急爲備禦之防。奸宄者，亦知某象應某事，其徵驗已默定於彼蒼，不容毫髮掩飾，于是亦有所警省，而不敢肆，庶幾邪說可熄，人心可正，而國家之禍亂，或可弭矣乎！” (◆는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

채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대 학인들은 선황(先皇)이 정한 법의 폐기를 과감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천문지식은 천문관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명말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식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다. 그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경전과 역사,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차용하는 방법이었다. 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425년 홍희제가 田 元원옥력상이부田 를 반포했을 때의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천문학습을 정당화하는 데 유리한 한 편의 전승을 재구성했다. 홍희제가 田 元원옥력상이부田 를 반포하면서 남긴 말은 “좌우의 보신(輔臣)들도 천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이었지만, 명대의 학인들은 홍희제가 “[천문의 사적인 학습을 금지하는] 田 대명률田 의 그 조항은 민간을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전승을 더 선호하여 기록에 남겼다. 천문의 사적인 학습이 금지된 대상은 사인 계층이 아니라 민간에 국한된다는 점을 이 기록은 분명히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천문의 ‘사습’을 옹호하기 위해 명대의 학인들이 보여준 또 다른 태도는 학습자의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천문을 공부하더라도 혹세무민하지 않으리라고 낙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 연간 이후로 서민들도 출판을 통해 보급된 천문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홍희제가 말했다고 전해진 위와 같은 언급들은 서민들의 천문학습까지도 정당화해줄 수는 없었다. 천문서적의 출판과 보급에 참여하고 있었던 명대의 몇몇 학인들은 천문지식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기밀에 준하는 지식으로 감춰져있던 진정한 천문지식을 알기만 하면, 아무리 간사한 소인배들이라 할지라도 천문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기보다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물론 모든 천문서적의 필자들이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서 소개했던 일용유서의 편찬자들에게 있어서 천문 ‘사습’의 금지령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용유서에 천문지식을 포함시켰던 어떤 편찬자는 천문 ‘사습’의 금지령을 외면한 채, 그림을 통한 천문현상의 표현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無象形)과 천문을 통한 점복이 실제로 들어맞는 일은 거의 없다는 회의론자들의 비판(無附合)만을 의식했다.⁷⁴⁾

그러나 명대 후기 천문서적의 출판 속에서 배태된 몇몇 학인들의 논리는 사뭇 놀라운

74) 劉子明, “天文門”, 田 妙錦萬寶全書田 卷1 (中國日用類書集成本), 52쪽. “天文之事, 幾誰知之. 其圖者未必無象形, 而說者亦未必無附合之誣也. 但各家諸書載梓行久, 姑且數類以備俗覽焉.”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소인이 천문지식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의 기본 이념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대 위징의 천문관(天文觀)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㉔ 당률㉔ 에 의해서 실제로 구현된 그 이념이 명대까지 거의 1천여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상기하면, 천문현상이 보여주는 징험을 두려워하고 반성할 줄 아는 소인을 전제로 하여 천문의 ‘사습’과 천문서적 출판의 정당성을 설파했던 명대 후기 학인들의 주장들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